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22. . . (제 회)	

군기령 일부개정령안

제 출 자	국무위원 이종섭 (국방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22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군기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「국군조직법」 개정 등을 통해 3군체제 하에서 해군에 속한 해병대의 위상이 강화되었으나, 해병대 조직 전체를 상징할 수 있는 군기(軍旗)가 없음.

따라서 해병대의 법적 위상과 임무의 특수성, 해병대사령관에게 위임된 권한 등을 고려하여 법규 정비를 통해 해병대기의 군기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.

3. 주요내용

가. 군기의 종류에 해병대기를 추가 (제3조)

- 1) 군기의 종류에 해병대기를 추가하여 군기를 합참기·각군기·해병대기·부대기·병과기·소부대기로 분류
- 2) 해병대기는 해군에 속한 해병대의 기를 의미함을 명시

나. 군기 제작 절차에 해병대기 추가(제5조)

- 1) 해병대기는 해군참모총장이 제작하되,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제작

다. 군기의 수여 범위를 명확화 (제6조)

- 1) 군기 수여자는 명시되어 있으나, 군기 수여의 범위(대상)가 모호함에 따라 “국군 조직의 변화로 새로운 조직이 만들어지거나, 부대 또는 병과의 창설 시 군기를 수여” 하는 것으로 수여 대상을 명확화
- 2) 군기 수여 기준에 해병대기 추가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기관 없음

라. 기 타 : 군기령 일부개정령안

군기령 일부개정령안

군기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군 기 령

제1조(목적) 이 영은 국군조직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기의 종류·규격·사용 및 관리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상징등)

- ① 군기는 군을 상징하고 그 명예를 표상한다.
- ② 군기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수호되어야 한다.

제3조(종류) 군기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이 합참기·각군기·해병대기·부대기·병과기 및 소부대기로 하되, 각각 정기와 약기로 구분한다.

- 1. 합참기 : 합동참모본부기를 말한다.
- 2. 각군기 : 육군기·해군기 및 공군기를 말한다.
- 3. 해병대기 : 해군에 속한 해병대의 기를 말한다.
- 4. 부대기 : 육군의 연대급(독립대대급 부대를 포함한다)이상의 부대, 해군의 전대급 이상의 부대, 공군의 전대급(전투비행대대급 부대를

포함한다) 이상의 부대 및 국방부직할부대의 기를 말한다.

5. 병과기 : 군인사법 제21조제4항 각호에 규정된 각군의 병과별 기를 말한다.

6. 소부대기 : 제2호의 부대기를 사용하는 부대외의 부대의 기를 말한다.

제4조(규격)

① 군기(소부대기를 제외한다. 이하 같다)의 규격은 부도1과 같다.

② 군기의 받침다리 및 보관상자의 규격은 부도2와 같다.

제5조(제작)

① 군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제작한다.

1. 부대 또는 병과의 창설

2. 멸실·마모·훼손 또는 위급한 상황으로 인한 소각

3. 규격 또는 표지내용의 변경

② 군기(합참기 및 국방부직할부대의 기를 제외한다)는 각 군참모총장이 제작하되, 각군기, 해병대기와 사단급이상의 부대(해군의 전단급 및 공군의 비행단급이상의 부대를 포함한다. 이하 같다)의 기는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제작한다.

③ 합참기는 합동참모의장이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제작한다.

④ 국방부직할부대의 기는 당해 국방부직할부대의 장이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제작한다.

제6조(수여) 군기는 국군조직의 변화로 새로운 조직이 만들어지거나 부대 또는 병과의 창설 시 다음 각호에 따라 수여한다.

1. 합참기·각군기·해병대기 및 사단급이상의 부대기는 대통령이

수여한다.

2.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부대기외의 부대기는 국방부장관이 수여한다.

3. 병과기는 각 군참모총장이 수여한다.

4.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합참기·각군기·해병대기 및 사단급이상의 부대기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부대기를 수여함에 있어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각각 국방부장관 및 각 군참모총장이 전수할 수 있다.

제7조(사용)

① 정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용한다.

1. 부대의 창설행사를 할 때

2. 부대장의 취임 또는 이임행사를 할 때

3. 부대가 전투에 임할 때

② 약기(합참기의 약기 및 국방부직할부대의 기의 약기를 제외한다)는 각 군참모총장이 정하는 경우에 사용한다.

③ 합참기의 약기는 합동참모의장이 정하는 경우에 사용한다.

④ 국방부직할부대의 기의 약기는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 사용한다.

제8조(군기의 반납 및 보관)

① 군기는 부대가 해체·통합되거나 병과가 폐지되는 때에 각 군참모총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. 다만, 합참기 및 국방부직할부대의 기는 국방부장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.

② 반납된 군기(정기에 한한다)는 영구보관한다.

제9조(소부대기) 소부대기의 규격·제작·사용 및 관리등에 관하여는

각 군참모총장이 정한다.

제10조(위임) 이 영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이 영 시행 당시 사용중인 해병대기는 이 영에 의하여
제작·수여된 것으로 본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조(목적) 이 영은 국군조직법 제5조 제2 규정에 의하여 군기의 종류·규격·사용 및 관리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제2조 (상징등) ① 군기는 군을 상징하고 그 명예를 표상한다. ② 군기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수호되어야 한다. 제3조(종류) 군기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이 합참기·각군기·부대기·병과기 및 소부대기로 하되, 각각 정기와 약기로 구분한다. 1. 합참기 : 합동참모본부기를 말한다. 2. 각군기 : 육군기·해군기 및 공군기를 말한다. 3. 부대기 : 육군의 연대급(독립대대급 부대를 포함한다)이상의 부대, 해군의 전대급 이상의 부대, 공군의 전대급(전투비행대대급 부대를 포함한다) 이상의 부대 및 국방부 직할부대의 기를 말한다.	제1조(목적) 이 영은 국군조직법 제5조 제2 규정에 의하여 군기의 종류·규격·사용 및 관리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제2조 (상징등) ① 군기는 군을 상징하고 그 명예를 표상한다. ② 군기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수호되어야 한다. 제3조(종류) 군기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이 합참기·각군기·해병대기·부대기·병과기 및 소부대기로 하되, 각각 정기와 약기로 구분한다. 1. 합참기 : 합동참모본부기를 말한다. 2. 각군기 : 육군기·해군기 및 공군기를 말한다. 3. 해병대기 : 해군에 속한 해병대의 기를 말한다. 4. 부대기 : 육군의 연대급(독립대대급 부대를 포함한다)이상의 부대, 해군의 전대급 이상의 부대, 공군의 전대급(전투비행대대급 부대를 포함한다) 이상의 부대 및 국방부 직할부대의 기를 말한다.

현행	개정안
4. 병과기 : 군인사법 제21조제4항 각호에 규정된 각군의 병과별 기를 말한다. 5. 소부대기 : 제2호의 부대기를 사용하는 부대외의 부대의 기를 말한다. 제4조(규격) ① 군기(소부대기를 제외한다. 이하 같다)의 규격은 부도1과 같다. ② 군기의 받침다리 및 보관상자의 규격은 부도2와 같다. 제5조(제작) ① 군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제작한다. 1. 부대 또는 병과의 창설 2. 멸실·마모·훼손 또는 위급한 상황으로 인한 소각 3. 규격 또는 표지내용의 변경 ② 군기(합참기 및 국방부직할부대의 기를 제외한다)는 각 군참모총장이 제작하되, 각군기와 사단급이상의 부대(해군의 전단급 및 공군의 비행단급이상의 부대를 포함한다. 이하 같다)의 기는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제작한다.	5. 병과기 : 군인사법 제21조제4항 각호에 규정된 각군의 병과별 기를 말한다. 6. 소부대기 : 제2호의 부대기를 사용하는 부대외의 부대의 기를 말한다. 제4조(규격) ① 군기(소부대기를 제외한다. 이하 같다)의 규격은 부도1과 같다. ② 군기의 받침다리 및 보관상자의 규격은 부도2와 같다. 제5조(제작) ① 군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제작한다. 1. 부대 또는 병과의 창설 2. 멸실·마모·훼손 또는 위급한 상황으로 인한 소각 3. 규격 또는 표지내용의 변경 ② 군기(합참기 및 국방부직할부대의 기를 제외한다)는 각 군참모총장이 제작하되, 각군기, 해병대기와 사단급이상의 부대(해군의 전단급 및 공군의 비행단급이상의 부대를 포함한다. 이하 같다)의 기는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제작한다.

현행	개정안
③ 합참기는 합동참모의장이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제작한다. ④ 국방부직할부대의 기는 당해 국방부직할부대의 장이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제작한다. 제6조(수여) ① 합참기·각군기및 사단급이상의 부대기는 대통령이 수여한다.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대기외의 부대기는 국방부장관이 수여한다. ③ 병과기는 각 군참모총장이 수여한다.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합참기·각군기 및 사단급이상의 부대기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대기를 수여함에 있어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각각 국방부장관 및 각 군참모총장이 전수할 수 있다. 제7조(사용) ① 정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용한다.	③ 합참기는 합동참모의장이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제작한다. ④ 국방부직할부대의 기는 당해 국방부직할부대의 장이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제작한다. 제6조(수여) 군기는 국군조직의 변화로 새로운 조직이 만들어지거나 부대 또는 병과의 창설 시 다음 각호에 따라 수여한다. 1. 합참기·각군기·해병대기 및 사단급이상의 부대기는 대통령이 수여한다. 2.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부대기외의 부대기는 국방부장관이 수여한다. 3. 병과기는 각 군참모총장이 수여한다. 4.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합참기·각군기·해병대기 및 사단급이상의 부대기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부대기를 수여함에 있어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각각 국방부장관 및 각 군참모총장이 전수할 수 있다. 제7조(사용) ① 정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용한다.

현행	개정안
1. 부대의 창설행사를 할 때 2. 부대장의 취임 또는 이임행사를 할 때 3. 부대가 전투에 임할 때 ② 약기(합참기의 약기 및 국방부 직할부대의 기의 약기를 제외한다)는 각 군참모총장이 정하는 경우에 사용한다. ③ 합참기의 약기는 합동참모의장이 정하는 경우에 사용한다. ④ 국방부직할부대의 기의 약기는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 사용한다. 제8조(군기의 반납 및 보관) ① 군기는 부대가 해체·통합되거나 병과가 폐지되는 때에 각 군참모총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. 다만, 합참기 및 국방부직할부대의 기는 국방부장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. ② 반납된 군기(정기에 한한다)는 영구보관한다. 제9조(소부대기) 소부대기의 규격·제작·사용 및 관리등에 관하여는 각 군참모총장이 정한다. 제10조(위임) 이 영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.	1. 부대의 창설행사를 할 때 2. 부대장의 취임 또는 이임행사를 할 때 3. 부대가 전투에 임할 때 ② 약기(합참기의 약기 및 국방부 직할부대의 기의 약기를 제외한다)는 각 군참모총장이 정하는 경우에 사용한다. ③ 합참기의 약기는 합동참모의장이 정하는 경우에 사용한다. ④ 국방부직할부대의 기의 약기는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 사용한다. 제8조(군기의 반납 및 보관) ① 군기는 부대가 해체·통합되거나 병과가 폐지되는 때에 각 군참모총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. 다만, 합참기 및 국방부직할부대의 기는 국방부장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. ② 반납된 군기(정기에 한한다)는 영구보관한다. 제9조(소부대기) 소부대기의 규격·제작·사용 및 관리등에 관하여는 각 군참모총장이 정한다. 제10조(위임) 이 영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.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국방부 병영정책과	
연 락 처	(02) 748 - 5157